

2025년도 가상·증강현실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공고

가상·증강현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 「2025년 가상·증강현실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」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.

*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5-606호의 연장 공고로서, 최초 공고일('25.8.25.)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·포상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0월 13일

산업통상부장관

1. 포상 목적

- 국내 가상·증강현실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·포상하여 노고를 격려하고, 산업 관계자의 사기를 고취하고자 함

2. 포상의 규모 : 총 5점

구 분	산업통상부 장관표창
	개인
가상·증강현실 산업 발전 유공자	5점

3. 포상 신청(추천) 대상 및 자격 요건

구 분	신청(추천) 대상	자격 요건
개인 표창	산업계 · 가상·증강현실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· 기술·제품 개발, 품질 개선 및 활용·확산, 양질의 일자리·신시장·신산업 창출 등을 통해 가상·증강현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	추천마감일(10.24) 기준 <u>가상·증강현실 분야</u> <u>3년 이상 근무</u>
	학·연구계 · 가상·증강현실 관련 학·연구계 종사자 (초·중·고·대학 교직원, 연구원 등 포함) · 기술개발 및 품질 개선 지원, 인력양성을 통해 국내 가상·증강현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	
	공공기관, 협·단체 · 가상·증강현실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, 조합 및 기타 단체 등 종사자 · 산업개선, 정책개발·지원, 저변확대, 산업·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가상·증강현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	

구 분		신청(추천) 대상	자격 요건
개인 표창	공무원	· 가상·증강현실 관련 분야 담당 공무원 · 산업개선, 정책개발·지원, 저변확대, 산업·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가상·증강 현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	추천마감일(10.24) 기준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(병역, 휴직 제외)

4. 추진절차 및 일정

- (1차 사전검토)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공적 사실여부, 미비사항 및 결격사항 등 확인
- (2차 심사평가)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추천심의회를 개최하여 서면심사 등을 통해 산업통상부에 후보자 추천
 - 심의회 구성 : 가상·증강현실 산·학·연 전문가로 5인 내외 구성 (신청 개인·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, 선정 후에도 이해관계 성립이 확인될 경우, 해당위원은 제척함)
 - 심사 기준 : 가상·증강현실 산업발전 기여도 등 공통 지표와 산업계, 학·연구계, 공무원·공공기관/협단체와 같은 소속별 특성에 맞춘 부문별 지표 기준으로 심사
- (최종 심사)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를 거쳐 최종 포상대상자 확정

<2025년도 가상·증강현실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추진일정>



* 진행상황, 관계부처 협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. 신청(추천) 방법

□ 신청 접수

- 제출기한 : 2025. 10. 24.(금) 18:00까지

○ 제출서류

구분	산업발전 유공자
공통	1. 포상신청서
	2. 공적조서 및 증빙
	3.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
	4.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
추가서류 (공무원)	1. 인사기록요약서
	2. 추천서

○ 제출방법 : 이메일 접수

※ 작성 원본 한글파일(.hwp)과 서명·날인 후 스캔파일(.pdf) 모두 송부

○ 접수 및 문의처 : 3D융합산업협회 이진수 팀장

- (전화) 02-6388-6081 / (이메일) js77@gokea.org

6. 기타 사항

○ 최종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시상 일정 등 별도 통보

○ 포상자 신청방법, 추천제한, 제출서류 등은 계획안(붙임) 참조

붙임 : 2025년 가상·증강현실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

2025년 가상·증강현실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

2025. 9.



산업통상자원부

목 차

I. 포상 개요 및 계획	1
1. 포상 목적	1
2. 포상 규모	1
3. 대상 및 자격	1
4. 추천 제한사항	2
1) 민간, 비공무원	2
2) 공무원	4
5. 추진절차 및 일정	6
6. 장관표창 취소	6
II.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	7
1. 제출서류	7
2. 신청 방법	7
3. 유의사항	7
[별첨 서식]	
1. 포상신청서	8
2. 공적조서	9
3.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	12
4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13
5.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	14

I 포상 개요 및 계획

1. 포상 목적

- 가상·증강현실 산업을 위한 정책·기술개발·산업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·표창함으로써 노고 격려
- 가상·증강현실 산업의 중요성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관심도를 제고함으로써 산업 활성화 도모 및 산업계 사기 진작

2. 포상 규모 : 5점 (장관표창)

구 분	산업통상부 장관표창
	개 인
가상·증강현실 산업 발전 유공자	5점

3. 대상 및 자격

- 가상·증강현실 관련 기술·제품 개발, 인력양성, 정책지원, 활용 확산 등을 통해 국내 가상·증강현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표창 추천일 기준, 수공기간 3년 이상인 자

구 분	신청(추천) 대상	자격요건
개인	산업계	추천마감일(10.17) 기준 <u>가상·증강현실 분야</u> <u>3년 이상 근무</u>
	학·연구계	

구 분		신청(추천) 대상	자격요건
개인	공공기관, 협·단체	· 가상·증강현실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, 조합 및 기타 단체 등 종사자 · 산업 개선, 정책개발·지원, 저변확대, 산업·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가상·증강현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	추천마감일(10.17) 기준 가상·증강현실 분야 3년 이상 근무
	공무원	· 가상·증강현실 관련 분야 담당 공무원 · 산업 개선, 정책개발·지원, 저변확대, 산업·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가상·증강현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	추천마감일(10.17) 기준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(병역, 휴직 제외)

4. 추천 제한사항

1) 민간(비공무원)

- 표창추천일 기준, **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** (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)
-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**

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,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- 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되어 형량 받은 경우 추천 가능

□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
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등

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
- '임원' :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
 - ※ 당해 사업장의 등기 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 - * 「사업자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회사별검색-사업장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 가능
 - 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- 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
-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* [고용부 홈페이지\(www.mol.go.kr\)](http://www.mo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사전정보 공표 목록 → 산재예방/산재보상 →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(pdf 파일) 내 검색

□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

- 최근 2년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(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)을 받은 법인(단체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- 최근 1년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-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* [공정위 홈페이지\(www.ftc.go.kr\)](http://www.ftc.go.kr) → 심결/법령 → 범위반사실조회 → 사업장명 검색

□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 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
□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임원

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 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 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 2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 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※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* [고용부 홈페이지\(www.moel.go.kr\)](http://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→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

-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-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 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2) 공무원

* 공공기관,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도 적용

-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
(창안상,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)
- 휴직 중인 자
- 수사 중인 자
- 재직 중 형사처벌 받은 자
 -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

- 다만,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,
-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,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(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)

<주요비위란>

「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)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

1.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(橫領), 배임(背任), 절도, 사기 또는 유용(流用)한 경우
 - 가.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기금
 - 나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기금
 - 다.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
 - 라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
 - 마.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「물품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
 - 바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
 - 사.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1의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

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3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
4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5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
6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

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

-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- 징계 또는 불문경고(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) 처분을 받은 자

- 다만, 경징계(감봉·견책, 군인의 경우 감봉·근신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,
-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
- ※ 퇴직공무원의 경우,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

징계의결 요구중인 자

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
-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
<p>※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(재직공무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주요비위(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)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<p>※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(퇴직공무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,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주요비위(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)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-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

5. 추진 절차 및 일정

구 분		세부 내용
공 모 (8~10월)	신청 및 추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류접수 (작성·제출 방법 7page 참조) • 제출기한 : 2025. 10. 17.(금) 18:00까지
평 가 및 선 정 (10~11월)	1차 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출 서류 검토하여 미비 내용 보완 및 공적내용 사실여부, 결격사항 등 확인
	2차 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포상추천심의회를 개최하여 서면심사 등을 통한 후보자 추천
	최종 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 심의를 거쳐 포상 대상자 선정
시 상 (12월)	시상식 개최 및 수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부일정은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예정

6. 장관표창 취소

-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
-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 기재한 경우

II

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

1. 제출서류

- 포상신청서 1부 <별첨서식 1>
- 공적조서 1부 <별첨서식 2>
- 장관포창에 대한 동의서 1부 <별첨서식 3>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<별첨서식 4>
-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
 - ※ 포상 분야 근무기간 증빙서류 필수(재직·경력증명서, 인사기록카드, 국민연금가입내역서 등)
 - ※ 과거 정부포상 기록이 있는 경우 정부포상 사본 등 필수

[공무원 추가 제출서류]

-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부 <별첨서식 4>
 - ※ 소속기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대조·확인하여 작성하고, 인사담당관 확인 및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
- 원 소속기관의 포상추천 동의 공문 1부 (타부처 소속의 경우)
 - ※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내용 필요(청원경찰, 별정우체국 포함)

2. 신청 방법

- 제출기한 : 2025. 10. 17.(금) 18:00까지
- 제출방법 : E-mail 제출 (js77@gokea.org)
 - ※ 작성 원본 한글파일(.hwp)과 서명·날인 후 스캔파일(.pdf) 모두 송부
 - ※ 필요시 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(단, E-mail 제출 필수)
- 담당자 : 3D융합산업협회 이진수 팀장(02-6388-6081)

3. 유의사항

- 기타 세부기준은 “산업통상부 장관포상 처리지침”에 의함
- 동 기간에 다른 추천기관에서 추진하는 포상대상자일 경우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, 향후 최종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

< 별첨 서식 2 >

공 적 조 서

성 명	(한글)	(한자)	
주민등록 번호	-	군번 (군인의 경우)	
		해당 없음	
국 적	대한민국		
주 소	주민등록지 상 주소 기재		
직 업	소 속		
회사원, 연구원, 국가공무원 등	회사 및 부서명 (사업자등록증상 (주) 앞뒤 위치 확인)		
직 위	등 급(직급·계급)	근 무 기 간	
차장, 상무·대표이사 등	ex) 행정사무관, 3급 등	0년 0월 *포상신청일 기준(2025. 9. 19.) 공무원 : 실 근무기간 작성 비공무원 : 가상 증강현실 분야 근무기간 작성	
공적요지 (50자 내외) * 뒷장의 공적사항을 요약 작성 * 실적 위주로 구체적 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* 막연한 내용, 수식어 및 미사여구 지양 / 쉽고 간명한 문장 ※ 공무원 : 조사자 - 담당 부서장 / 추천관 - 담당 정책관(국장급), 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장 ※ 민간(비공무원) : 조사자 - 담당자 또는 부서장 / 추천관 -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 등			
추천훈격		추천순위	
조 사 자			
소 속		직 위	
직 급		성 명	(인)
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2025년 월 일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 추 천 관 홍길동 대표이사 (인) </div>			

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(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)			
제재시작일 (제재예정일 포함)	제재종료일 (제재예정일 포함)	제재사유	
0000.00.00	0000.00.00		
과거 포상기록 (훈장·포장·표창별로 기록)			
<작성요령 삭제> ※ 장관 이상 정부포상만 기재(훈·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·장관 표창) / 기간 무관 ※ 기타 관련 포상 이력은 공적사항(아래)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			
년 월 일	내 용	년 월 일	내 용
0000.00.00	ex)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(XXX 유공)		
주 요 학 력 및 경 력			
<작성요령 삭제> ※ 공적분야(가상·증강현실) 관련 이력 기재 ※ 앞장의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, 기타 이력사항은 공적사항(아래)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			
년 월 일	이 력	년 월 일	이 력
0000.00.00~0000.00.00			
공 적 사 항			
<작성요령> 삭제 후 글자색 검정으로 작성 - 글자모양 : 휴먼명조, 12Point / 행간 : 160% - 개조식 작성 (글 앞에 번호·기호를 붙여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) - ‘공적 사항’이 많은 경우 페이지 추가하여 기술할 수 있음 -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- 대표이사 등을 제외한 임직원은 소속기관의 전체성과가 아닌 직접 관여한 업무 및 실제 기여한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기재(구체적 성과, 실적 수치화) ex) 대표이사(기업 전체 성과), 대표이사 제외 임원(해당 부서 성과), 직원(담당 업무 실적) - 공적내용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첨(증빙자료가 없는 내용은 불인정될 수 있음)			
수공기간	재직기관별 경력(재직)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서		
과거 포상기록	기 수상 상패나 상장 스캔본 또는 상훈 홈페이지 캡처본		
공적사항	신제품·신기술 개발 관련 언론보도(학술지), 특허증, 인증서 사본 등		
매출액/영업이익	공시데이터, 표준재무제표증명(직전 2개년)		
수출액	수출실적증명서 (무역협회,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금융권 확인증명서 등)		
종업원수	공시데이터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(민감정보 삭제)		

공 적 사 항

<작성 내용 예시> 삭제 후 글자색 검정으로 작성

가. 대표자의 경우, 작성 내용 예시

- 회사설립현황
- 회사규모 확대(매출, 종업원)
- 기술개발, 시장개척, 품질향상, 활용·확산 등의 노력 및 성과
- 일자리 창출, 신시장 개척, 신사업 발굴 등의 노력 및 성과
- 기타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및 성과
- 대외 수상실적, 특허, 인증 등
- 직원복지
- 봉사활동 등 사회적 책임

나. 담당 임원 및 직원의 경우, 작성 내용 예시

- 근무연수, 근무경력
- (산업계) 회사 내 기술개발, 품질개선, 생산성 향상 및 수출증대 등을 위한 기여도
- (학·연구계) 신기술 개발 실적, 품질개선 지원, 인력양성 노력 등
- (공공기관 등) 산업 개선, 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, 저변확대, 정책개발 실적 등
- 기타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및 성과
- 대내외 수상실적, 특허, 인증 등 개인 공적

※ 공적조서 작성원본 한글파일(.hwp) 및 서명/날인한 스캔본(.pdf) 모두 제출

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

(장관표창 후보자용)

장관표창 후보자

성명			
소속(주소)		직위(급)	

위 본인은 가상·증상현실 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-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- 산업통상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25. . .

성명 (서명)

< 개인정보 제공 동의 >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-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,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,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
-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직급(계급), 공적내용, 공적요지, 주요경력, 군번(군인의 경우), 국적(외국인의 경우)
-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표창기록부는 영구,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

<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 /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>

< 별첨 서식 4 >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(장관표창 후보자용)

< 개인정보 제공 동의 >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,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,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
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
 - 개인정보 항목 : 성명(단체명, 한자)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등급(직급, 계급), 근무기간, 공적요지, 주요경력, 군번(군인의 경우), 국적, 과거포상
 - 민감정보 항목 : 징계, 형벌 (해당 시에 수집·이용)
3.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표창 기록부는 영구, 표창 추천서 및 상훈 민원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

위와 같이 2025. . .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합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습니다.	성명	(서명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

위와 같이 2025. . . 민감정보(해당 시)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합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습니다.	성명	(서명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

<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 제공 동의 >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,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,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
2. (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) 주민등록번호
3. (수집근거) 정부 표창 규정 제27조(대통령령 제31380호)
4.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표창 기록부는 영구, 표창 추천서 및 상훈 민원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

위와 같이 2025. . .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합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습니다.	성명	(서명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

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

- (1)~(18)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.
- (1) 란의 “소속기관”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.
(예시 : ○○광역시 ○○구청, ○○초등학교, 육군○○부대)
- (2) 란은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.
(예시 : ○○국장, ○○과장, ○○출장소장, ○○초등학교장, 해군 제○○함대장)
- (3)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.
(예시 : 교사, 공군원사, 행정주사, 기술서기관)
- (4)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(正字)로 기재한다.
- (5)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.
- (6)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.
- (7) 란은 해당란에 “■”로 표시한다. (기타는 사망자, 임기만료 등 해당)
- (8)~(11)란은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.
- (12) 란은 재직경력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.
- (13)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.
- (15)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, 징계기록(불문 경고포함)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.
- (16) 란은 과거에 표창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,
특히 최근 3년 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.
- (17)~(18) 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,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.
- (19) 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.